

2015.01.08

2015년 관세행정 이렇게 달라진다 '2014년 하반기 제도개선 결과 새로이 시행되는 제도 안내'

관세청에서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'규제개혁 200대 과제'를 상당수 반영하여 "2015년 달라지는 관세행정"을 발표하였습니다.

주요 내용 중, 수출입기업들이 눈여겨 볼만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👉 주요내용

1.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시행('15,1.1시행)

- ▶ 관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나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구제방법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청구기간을 5년으로 연장
- ▶ 납세자가 관세청장에게 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사전조정 제도 시행

2. 통관 물류제도 개선

- ▶ 수입신고 첨부서류를 전자제출 하는 때 모든 란별로 중복하여 첨부하던 것을 한번만 첨부하면 되도록 간소화
- ▶ 수입신고 수리 후 발행되는 신고필증의 발행내역과 정정사항을 이력관리 하여 진위여부의 파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위변조 방지
- ▶ 보세구역 부정운영 사례 방지

세인 소식지

www.seincustoms.com

2015.01.08

3. 사회 관심품목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

- ▶ 2015년 쌀 수입 전면 개방으로 저가신고 방지를 위하여 9개의 통관지세관에서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운영 예정
- ▶ 국내 담뱃값 인상으로 밀수유인이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 '수출입관리시스템'과 행자부 '지방세 관리시스템' 연계하여 밀수 방지

4. 세계 합리화 방안 시행 ('15.1.1 시행)

- ▶ 고액 관세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5억원 이상 체납액의 경우 5년 이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
- ▶ 밀수출입죄의 법정형을 '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'으로 합리적으로 조정

5.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

- ▶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하여 월별납부 자격을 '최근 3년간 수입과 납세실적이 있는 자'에서 그 기간을 최근 2년으로 완화
- ▶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입실적이 300억원 이하인 기업은 정기 관세조사를 면제하고 수출입 실적이 30억 이하인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기조사를 포함한 모든 관세조사를 면제할 예정

6.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

- ▶ 일정 소액 수입물품*은 면세와 안전확인 통관절차가 생략되는 점을 악용하여 선하증권(B/L)을 분할하여 신고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 ('15.1월 중 시행)

* 물품가격이 미화 100불(미국은200불) 이하인 경우 목록제출만으로 통관되고, 과세가격이 한화 15만원 이하 물품은 소액면세 가능

※ 이하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.